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

2017. 1.

1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같은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과 동시에 현행법의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안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과 함께 현행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95호)와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695호)

- 현행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 사고, 음주측정 거부, 중앙선 침범 등 11개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의 반사회성이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전제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3조제1항),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하여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경우를 현행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하며(안 제3조제2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례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 개정 반대

- 동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법’이라 칭함)상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량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교통법에서 인용한 형법까지 동일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교통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최근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교통법’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량 및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엔 공감하나, 이러한 제안의 이유로 현행 형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 및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교통법의 개정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교통법상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라면 특례법을 일반형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특히,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¹⁾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는 선고가 있는바, 판례와 같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범위는 일부업무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주변의 모든 업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각 업무의 행위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및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직종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의 경우처럼 이러한 구체적 태양에 대한 고려없이 상해와 사망만으로 구분하여 형량을 상향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침습성을 기반으로 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상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의료의 침습으로 얻는 이익이 침습으로 인한 인체의 위해보다 크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상해와 사망을 구분하여 처벌의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제반상황에 맞추어 이익형량과 결과회피의무의 이행여부, 위험방지조치 등의 점을 검토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 또한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법’상의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이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될 수는 없어 강한 규제가 필요하나, 다른 업무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응급의료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가 수행되는바, 이러한 승낙된 행위로 기인하여 발생한 과실치사상 행위는 교통사고와는 다르므로 달리 규율되어야 함.

- 이에 교통법상의 개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동 개정안처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상해 또는 사망으로 나누어 처벌할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개정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높아 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함.